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9. 22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. 9. 22

다. 상정일자 : 제1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1992. 9. 24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: 제안이유, 주요골자 별첨안 참조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별첨 자료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가. 질의

○ 류대형 위원

- 1) 현재 멸실하는 건물공사비는 경찰서 재원인지, 부산시 재원인지 여부?
- 2) 당초 서부경찰서의 소유이던 재산이 개인 명의로 이전후 다시 부산시로 이전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지?

○ 김성열 위원

- 1) 현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실질적으로 노후되어 신축하는 것인지, 집행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였는지?
- 2) 경찰서 예산으로 신축한다면 경찰서와 집행기관 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?

나. 답변

○ 재무과장

- 1) 당초 건축비 재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회계서류는 보존년한이 10년으로 재원 관계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,
- 2) 소유권 변동 사항은 자치구 이전에 부산시 소유로 관리하다 소유권 이전 절차만 남아 있지 재산관리 내역은 파악 못하였으며,
- 3) 건물의 노후 정도와 현지답사는 관계직원이 현장확인 하였으며, 노후정도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건물 수명년한 등 파악이 곤란하였고, 건축당시 파출소 인력과 현재 인력 및 장비 등 수요가 증가되어 현 청사로는 협소하므로 멸실신청
- 4) 재산관리와 건축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 재무과에서는 멸실 관계만 파악하고 신축할 건물 구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습.

5. 토 론 요 지

가. 김광욱 위원(찬성 토론)

- 장림1파출소가 '74. 2. 6 신축하여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주민수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신축하여야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하여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의결(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)